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명 : 감리교신학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승강기 안전장치 개선 공사
- 나. 공사장소 :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56 감리교신학대학교
-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간
- 라. 공사내용 : 손가락 끼임 방지장치, 승강장 문 이탈방지 장치, 카의 상승과속 방지장치, 카의 개문출발 방지장치, 이중브레이크, 자동구출장치,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설치

2. 입찰일정 :

구분	입찰공고기간	입찰신청 등록마감	입찰일시
일시	2021.5.11(화)~5.18(화)	2021.5.17(월) 15:00까지	2021.5.18(화) 11:00
내용	학교 홈페이지 공고	백주년기념관 1층 사무관리과	백주년기념관 2층 회의실 (현장투찰)

3.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총액 최저가 입찰방식 · 현장투찰)

4.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필요시 담당자 전화연락 후 공사현장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나. 입찰참가 등록마감 시한까지 등록을 필한 자
-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승강기 제조사의 순정부품공급 확인서류 제출이 가능한 업체
- 라.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소재한 업체.
- 마.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따라 부적당업자로 제재합니다.

6. 개찰 :

- 가. 개찰일시 : 2021. 05. 18(화) 11:00
- 나. 개찰장소 : 감리교신학대학교 백주년기념관 2F 회의실
- 다. 입찰시 제출서류 : 입찰서 및 내역서(VAT포함), 입찰보증보험증권을 함께 밀봉하여 사용인감 날인 후 투찰하여야 한다.

7. 낙찰자결정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총액 최저가 투찰업체.
-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동일가격 입찰업체의 참석하에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한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업체

9. **입찰참가신청 구비서류** :

- 가. 입찰참가 등록신청서 1부.
- 나.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부 등본(해당 경우) 각1부.
- 다.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각1부.
- 라.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각1부.
- 마.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증권(입찰서와 함께 동봉) 1부.
- 바. 대리인 입찰 참여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1부.
- 사.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 아. 승강기 제조사 순정부품공급 협약서 1부.

10. **기타사항** :

-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입찰 참가업체는 입찰 당일 입찰장소에 입회하여야 하며, 개시시간 이후에는 입회가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본 입찰에 관한 제반서류는 본교 홈페이지(<http://www.mtu.ac.kr/>)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총무처 서무관리과(☎ 02-361-9219/정덕수 과장)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찰참가등록신청서, 입찰서, 입찰유의서, 공사시방서

각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5.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56 (냉천동 31)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입찰참가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감리교신학대학교(이하 “본교” 이라 한다)이 행하는 『백주년기념관 승강기 안전장치 개선공사』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회계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교 총무처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입찰참가 등록신청서 1부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부 등본(해당 경우) 각1부
- ③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 사용인감계 각1부
- ④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각1부
- ⑤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증권(입찰서와 함께 동봉) 1부
- ⑥ 대리인 입찰 참여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
- ⑦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 ⑧ 승강기 제조사 순정부품공급 약속서 1부

제4조(입찰참가자격)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② 입찰참가 등록마감 시한까지 등록을 필한 자
- ③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승강기제조사의 순정부품공급 확인서류 제출이 가능한 업체
- ④ 입찰공고일 현재 주 영업소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소재한 업체.
- 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따라 부적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제5조(입찰일정)

- ① 등록마감 : 2021. 05. 17(월) 15:00
- ② 입찰일시 : 2021. 05. 18(화) 11:00
- ③ 입찰장소 : 감리교신학대학교 백주년기념관(2F) 회의실

제6조(입찰보증금)

-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서와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귀속된다.

제7조(입찰참가)

- ① 입찰 참가신청을 한 업체 중 본교에서 입찰 참가 승낙을 받은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하고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 대리인은 그 회사의 직원에 한하여 대리인으로 위임할 수 있다.
- ③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 신청시에 제출한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동일하거나 또는 사용인감계상의 사용인감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 ① 입찰서는 본교에서 지급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총액입찰인 경우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 ②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③ 입찰서의 금액 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재한 금액과 아라비아숫자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 ④ 내자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및 설치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⑤ 외자 입찰의 경우 외자금액과 한화로 환산한 금액을 같이 표기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 ① 입찰서는 봉인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③ 입찰서 제출시 입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견적서를 입찰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10조(입찰의 성립)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 ①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②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③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④ 동일 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⑤ 동일 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 ⑥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 ⑦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 ⑧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 신청시에 제출한 인감으로 입찰서에 날인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
- ⑨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 담당 직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있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입찰

제12조(낙찰자의 결정)

- ① 유효한 입찰자 중 본교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 품목별 내역서 총액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

로 선정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최저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 ③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되 재공고입찰을 실시한 후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최저응찰 업체 순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견품의 제출) 입찰자는 본교가 견품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 입찰 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제15조(입찰의 연기)

- ① 본교는 필요한 경우에 입찰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본교는 1차 입찰에서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체결)

-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 대학교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대학교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되며 입찰 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된다.
- 다) 계약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계약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후 계약사항 미이행시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된다.
- 라) 계약 후 납기내 납품하지 않을 시 물품대금의 1.5/1000을 지체일수만큼 지체상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9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공사시방서

I. 공사개요

- 공사명 : 백주년기념관 승강기 안전장치 개선 공사
- 공사목적 : 승강기 안전장치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리한 사용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 공사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 56 감리교신학대학교 백주년기념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
- 공사대상 :

설치장소	호기	제어방식	적재하중(kg)	운행층수	설치년도	제작사
백주년기념관	1	권상식 VVVF	1,000	8Stop	1998	오티스
백주년기념관	2	권상식 VVVF	1,350	8Stop	1998	오티스
백주년기념관	3	권상식 VVVF	550	3Stop	1998	오티스

6. 공사의 범위

- 손가락 끼임 방지장치 설치
- 카의 상승과속 방지장치 설치
- 카의 개문출발 방지장치 설치
- 이중브레이크 설치
- 자동구출장치 설치
-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 설치
-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설치
- 공사범위에 있는 장치 및 설치에 필요한 추가 모든 구성품 포함

II.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승강기 안전장치 개량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승강기안전관리법, 건축, 기계설비 및 전기관련법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등에 의한 형식·승인 제품으로서 최상급 원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승강기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본 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조건에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 발주처 : 발주처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인 감리교신학대학교를 말한다.
- 시공자 :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의 계약대상

자이며 “계약자” 라 한다.

다. 감독원 : 감독원이라 함은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임명한 공사 감독원을 말한다.

3. 시공계획

가.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아래 내용을 포함한 착공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하여야 하며, 공사기한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계약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① 착공계
- ② 건설기술자(시공관리책임자) 선임계
- ③ 공사예정공정표
- ④ 주요부품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 ⑤ 기타 감독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나. 계약자는 공사 전 현장 및 타 공정과 협의하여 공사 전 공사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 후 공사하여야 한다.

4. 현장 대리인

가. 계약자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 및 안전관리 등 전 업무(관계 서류의 작성, 시공, 각종 검사의 입회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총괄책임을 져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공사 중 현장을 떠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 현장대리인을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의 자격이나 숙련도 등에 대하여 부적격자로 판정시는 발주처의 교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5. 현장조사

계약자는 계약 후 현장을 반드시 사전에 답사하여 제어반, 구동기, 각 종 안전스위치(센서류) 등 주요부품의 규격 및 사양을 확인하고, 정확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계약자의 의무

가. 본 시방서에 의거 공급될 자재는 승강기 부품안전인증, KS표시품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신제품으로 제작 설치되어야 하고 안전성과 정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현장을 확인 점검하고 감독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관련도면 및 예정공정표를 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자는 설치(제품 제작 포함)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장은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된 “발주처”의 손해에 대해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자”가 지며, 배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감독원의 요청 또는 필요시 공정 상태를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승강기검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7. 도면 및 기타 승인

가. 계약자는 착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기기의 제작, 설치 및 공정에 관하여 아래의 승인도면을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 ① 제어반, 구동부 등 주요부품 인증서 및 관련 서류(도면, 시험성적서, 규격/사양 등)
- ② 공정표(중간검사 일정표 포함)

나. 감독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자가 제출한 도면 및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 안전 관리

가. 계약자는 노동법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를 행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 ③ 시공자재 및 기기의 정비와 관리, 공사장 청소
- ④ 교체공사 작업장 근처 안전휀스 설치 및 안내문구 부착 철저
- ⑤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 ⑥ 계약자는 공사 중 발생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당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 ⑦ 공사 중 비상시에 대비하여 응급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약품 및 의료시설을 준비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공도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관리 수칙의 제반 이행 사항을 충실히 지키도록 종사원에게 반복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원, 안전관리원 등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9. 사고방지 및 대처

가. 계약자는 검사 및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 자재를 지정 장소에 보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에서는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등 필요한 안전용구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응급조치 후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공사중 발생한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라. 작업상 화기(용접 등) 등을 취급할 경우에는 작업장에 반드시 적합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고, 용접작업 및 각종 철재류 절단(그라인딩) 작업을 할 경우 연기·냄새를 화재로 착각하여 민원 발생 및 소방관이 출동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마.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원활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근로자 재해보험을 가입(공사명 반드시 입력)하여 가입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0. 사용자재 및 검사

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승강기안전관리법의 인증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필요시 감독원은 계약자가 반입한 재료(자체 시험성적서 등)에 대하여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인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가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재는 신제품으로써 기계 및 재료는 사용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반입 자재의 검사결과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 및 확인을 득하지 않고 사용한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주요자재 및 기기제작의 품질을 위하여 중간검사 일정을 승인도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1. 공사 기간의 연기 및 중지

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공사를 중지 또는 연기할 수 있다.

가. 관급자재의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

나.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 기간이 연장을 요할 경우

다. 관련 공정의 공사 지연으로 시공이 불가할 경우

라. 기타 발주처 사정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12. 설계변경 및 정산

본 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주요 구조물의 변경 및 현장의 조건 변경

나. 주요 공법의 변경

다.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기타 계약서에 명기된 설계 변경요건인 경우

13. 발생물 처리

계약자는 공사진행중에 발생하는 부산물은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 정리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가. 승강기 부품교체로 발생한 폐기물은 계약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처리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여 보관하며 일정량이 되면 즉시 외부로 반출한다.

14. 시운전

가. 계약자는 설치 완료 후 감독원 입회하에 2시간 이상의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운전 중 미비 사항은 계약자 책임 하에 즉시 보완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승강기 안전관리법 강화에 따른 승강기 개량과 관련한 모든 장애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전량 무상수리 및 교체하여야 한다.

15. 주간공정보고

공정보고서에는 공종별 예정/실행공정, 주요 작업사항, 인원 및 장비 투입현황과 공사추진 계획을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 하자보증기간

시공사는 법정검사 완료 후 사용자의 고의적 사고나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제작, 구입, 시공 및 유지보수 잘못 등의 하자에 대하여 3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승강기 관리주체가 품질보증서의 사용, 관리요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정비 및 교체하여야 한다.

17. 공사의 준공

가. 설치작업 완료일은 공사가 완료되어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한 법정검사에 합격하고 검사기관의 양식과 시공자의 부품 설명서를 검사양식과 함께 첨부하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한 날을 준공된 것으로 본다.

나. 계약자는 준공 기일 내에 다음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준공도면(부품 상세도) : 2부
- ② 제작 및 설치공정(호기별) 사진대장 : 2부
- ③ 각종 시험 결과서 1부
- ④ 교체부품 인증서(승강기 부품안전인증) 및 각종 검사성적서 2부
- ⑤ 유지보수 매뉴얼(에러코드 및 조치요령 등) : 2부
- ⑥ 제어시스템 프로그램(PLC 포함) 및 프로토콜 자료 : 2부
- ⑦ 사용부품 전체 목록(규격/사양 명시) : 2부.

18. 대가의 지급

가. 계약자는 감독원의 공사 요구 설치 물량을 기한 내에 작업을 완료하고 감독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원은 공사 회계규정에 의거 검사를 완료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다. 목록에서 누락된 공중에 대한 품은 유사 공중을 적용한다.

라. 누락된 공중에 대하여 낙찰률을 기준하여 적용한다.

마. 재료비 및 노무비 적용시 설계가 불가능한 항목 또는 누락된 공중일 경우에는 3개 이상의 견적을 첨부하여 최저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19. 야간작업

가. 본 공사는 주간작업으로 시행하고, 야간작업이 필요할 시는 감독원과 협의 하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야간작업 시행시에는 작업 2일전까지 작업일정을 첨부한 야간작업 계획서를 감독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 안내표시

가. 계약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안내표시를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시행 전에 현장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안내표시에는 사업명, 발주청, 계약자, 공사기간, 연락처 등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명시해야 한다.

다. 안내표시는 현장에서 감독원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안내표시가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0. 기타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최신본 승강기 검사기준에 준한다.

나. 공사 후 계속되는 승강기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교체공사가 되어야 한다.